

## 2021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

2021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20일

국 회 사 무 총 장

### 1 선발예정인원

| 시 험 명       | 직 렬 (직 류)    | 인 원 |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|
|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| 속 기 직 (속 기)  | 일 반 | 3명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장 애 | 1명 |
|             | 경 위 직 (경 위)  | 2명  |    |
|             | 방 호 직 (방 호)  | 3명  |    |
|             | 안 내 직 (안 내)  | 1명  |    |
|             | 사 서 직 (사 서)  | 일 반 | 9명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장 애 | 2명 |
|             | 기 계 직 (기계설비) | 2명  |    |
|             | 전 산 직 (전 산)  | 일 반 | 8명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장 애 | 1명 |
|             | 통신기술직 (통신기술) | 1명  |    |
|             | 전 기 직 (전 기)  | 1명  |    |
|             | 조 경 직 (조 경)  | 2명  |    |

※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2 시험과목

| 구 분  | 직 렬 (직 류)    | 시 험 과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필기시험 | 속 기 직 (속 기)  | 국어, 영어, 헌법, 한국사, 행정학개론<br>[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(100분)]      |
|      | 경 위 직 (경 위)  | 국어, 영어, 헌법, 한국사, 행정법총론<br>[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(100분)]      |
|      | 방 호 직 (방 호)  | 국어, 영어, 헌법, 한국사, 사회<br>[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(100분)]         |
|      | 안 내 직 (안 내)  | 국어, 영어, 헌법, 한국사, 사회<br>[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(100분)]         |
|      | 사 서 직 (사 서)  | 국어, 영어, 헌법, 한국사, 정보학개론<br>[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(100분)]      |
|      | 기 계 직 (기 계)  | 국어, 영어, 한국사, 기계일반, 기계설계<br>[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(100분)]     |
|      | 전 산 직 (전 산)  | 국어, 영어, 한국사, 컴퓨터일반, 정보보호론<br>[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(100분)]   |
|      | 통신기술직 (통신기술) | 국어, 영어, 한국사, 통신이론, 전자공학개론<br>[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(100분)]   |
|      | 전 기 직 (전 기)  | 국어, 영어, 한국사, 전기이론, 전기기기<br>[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(100분)]     |
|      | 조 경 직 (조 경)  | 국어, 영어, 한국사, 조경학, 조경계획 및 설계<br>[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(100분)] |
| 실기시험 | 속 기 직 (속 기)  | 논설체 및 연설체(2과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경 위 직 (경 위)  | 100미터 달리기, 1,000미터 달리기, 팔굽혀펴기, 윗몸일으키기, 좌우악력 (총 5종목)   |
|      | 방 호 직 (방 호)  | 100미터 달리기, 1,000미터 달리기, 팔굽혀펴기, 윗몸일으키기, 좌우악력 (총 5종목)   |

※ 실기시험 시험과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#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| 응시원서 접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 | 시험장소<br>공고일 | 시험일                        | 합격자<br>발표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2021. 6. 1.(화) 09:30<br>~<br>2021. 6. 8.(화) 17:00 | 필기시험               | 8. 6.(금)    | 8. 14.(토)                  | 9. 17.(금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기시험<br>(속기직)      | 9. 17.(금)   | 9. 28.(화)                  | 10. 8.(금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기시험<br>(경위직, 방호직) | 9. 17.(금)   | 10. 1.(금)                  | 10. 8.(금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접시험               | 10. 11.(월)  | 10. 18.(월)<br>~ 10. 21.(목) | 10. 22.(금) |

※ 응시원서 결제취소 마감일은 6. 10.(목) 21:00 입니다.

※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험장소·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.

### 4 응시자격

| 구 분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결 격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◦ 「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(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의 “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 안내” 참조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 령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18세 이상인 자(2003. 12. 31. 이전 출생자)</li> <li>◦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않는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격·경력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제한 없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애인 응시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◦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함</li> <li>◦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</li> <li>◦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[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 또는 장애인 증명서, 국가유공자증]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</li> </ul> |

※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예정일 기준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 렬 |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자격증</b><br><b>(속기직, 사서직, 전산직 해당)</b> | 속기직 | 한글속기 1·2·3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서직 | 1·2급 정사서, 준사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산직 | 기술사 :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<br>기사 : 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<br>산업기사 : 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<br>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|
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.

※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,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.

※ 면접시험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취득예정 자격증명 및 취득예정 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(아래 ‘응시원서 접수방법’ 참고).

※ 경위직, 방호직, 안내직, 기계직, 통신기술직, 전기직, 조경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및 기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신체조건</b><br><b>(경위직, 방호직만 해당)</b> | 체 격     | ◦ 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·다리가 완전해야 함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 력     | ◦ 두 눈의 시력(교정시력 포함)이 각각 0.8 이상이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청 력     | ◦ 청력이 정상(좌우 각각 40데시벨(dB)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)이어야 함             |

※ 「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」 일부개정(2011. 9. 26.)으로 기존의 키와 몸무게에 따른 응시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.

※ 경위직·방호직 채용시험 응시자는 신체조건 관련 증빙서류로 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에 게시된 “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위의 신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## 5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으로 접수)

### 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방법 :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.  
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-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(2021. 6. 1.(화) ~ 6. 8.(화)) 중
  - 6. 1.(화) : 09:30 ~ 24:00
  - 6. 2.(수) ~ 6. 7.(월) : 00:00 ~ 24:00
  - 6. 8.(화) : 00:00 ~ 17:00 (원서접수 마감일)
- ※ 마감시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.
-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: 신용카드 결제, 휴대폰 결제, 계좌이체(본인계좌만 가능)
- 기 타 : 응시수수료(5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계좌이체·카드결제·휴대폰결제 비용)이 소요되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(jpg, 200KB 미만)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저소득층 해당자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. 단,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 기타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결제방법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필수자격증 및 직렬별 가산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,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  - 필수자격증 : 면접시험 시행일(2021. 10. 18. ~ 10. 21.)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
  - 직렬별 가산자격증 : 필기시험 시행일(2021. 8. 14.)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

| 자격증   | "취득예정 자격증명" | 기관   | "발급기관"  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자격증번호 | "취득예정"      | 취득일자 | "합격발표일자" |

[예시 : 속기직]

| 자격증   | 한글속기3급 | 기관   | 대한상공회의소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자격증번호 | 취득예정   | 취득일자 | 2021-10-17 |

### 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21. 6. 1.(화) ~ 6. 10.(목) [단,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(6. 10.)에 한해 21:00까지]이며,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

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계좌이체·카드결제·휴대폰결제 비용)은 환불이 불가합니다.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저소득층 해당자를 제외한 응시생의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.

-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.  
※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,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표 출력기간은 2021. 8. 2.(월) ~ 10. 22.(금)까지입니다.

##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

### 가. 적용대상

-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, 시각·뇌병변·지체·청각장애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, 과민성 대장(방광)증후군 환자 등 아래 편의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자

### 나.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

| 장애유형 및 정도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편의지원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시각장애      | 공통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<br>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| 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<br>·음성지원컴퓨터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<br>의사진단서 원본 1부 | 기존 1~2급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| ·점자문제지(희망자)<br>·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)<br>·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3급 2호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|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| 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| 기존 3급 1,2호 |

| 장애유형 및 정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편의지원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장애<br>정도가<br>심하지<br>않은<br>사람                |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| 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<br>·음성지원컴퓨터<br>·점자문제지(희망자)<br>·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)<br>·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<br>의사진단서 원본 1부 | 기존<br>4급 2호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                  | 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<br>의사진단서 원본 1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<br>의사진단서 원본 1부 | 기존<br>4,5급 1호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 이하인 사람           | 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<br>의사진단서 원본 1부 | 기존 6급<br>중 좋은 눈<br>교정시력<br>0.3 이하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| 기존<br>5급 2호,<br>6급                |
| 뇌병변<br>장애 | 공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<br>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br>·휠체어 전용책상(높은 책상)<br>·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| 기존<br>1~3급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<br>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대필(선택형 시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<br>의사진단서 원본 1부 | 기존<br>4~6급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 체<br>장애 | 상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<br>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br>·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<br>·대필(선택형 시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| 기존<br>1~3급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| 기존<br>4~6급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/<br>심하지 않은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휠체어 전용책상(높은 책상)<br>·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| 기존<br>1~6급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청각<br>장애  |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/<br>심하지 않은 사람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| 기존<br>2~6급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   | 특수 및 중복장애·일시적<br>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<br>지장이 있는 사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사진단서(의사소견서)<br>원본 1부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임신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<br>·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<br>·높낮이 조절 책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사소견서 또는<br>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과민성대장·방광증후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<br>·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- 축소문제지 : A4 용지로 제공되며, 축소비율 82%(10pt)로 제공(확대독서기 사용자)
-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
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 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 바랍니다(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.
- ※ 진단서 등 서류검토 후,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,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합니다.
- ※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점자규정('17. 3. 28. 시행)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.

#### 다.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서                 | ◦ 별첨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애인증명서              | ◦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사진단서<br>및<br>의사소견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발급기관 :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<b>종합병원</b>(상급종합병원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임신부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도 허용</li> <li>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hira.or.kr">www.hira.or.kr</a>) [병원약국 찾기]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.</li> </ul> </li> <li>◦ <b>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</b>이 있는 <b>원본</b></li> <li>◦ 발급일자 : <b>2019. 6. 9.부터 인정</b>(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)</li> <li>◦ 의사진단서(소견서) 내용(<b>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</b>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당 편의지원 필요성 기술(아래 예시 참고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해당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/및 시야값 명기</li> </ul> </li> <li>② 시험 응시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</li> <li>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</li> </ol> </li> <li>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</li> <li>-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.</li> <li>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(소견서)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의함.</li> </ul> </li> </ul> |

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각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    |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, ③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|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|
| 뇌병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| 상기인은 ①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대상자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,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        |
| 임신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상기인은 ①임신 30주, 필기시험 예정일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자로서, ②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          |
|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상기인은 ①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,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(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◦ 기타</p> <p>① 의사진단서(소견서)가 필요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(별첨서식)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(상급)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(소견서 불인정)</p>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라. 증빙서류 제출절차

- ▶ 제출기한 : **2021. 6. 8.(화)** (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)
- ▶ 신청방법 : 작성한 신청서(별첨 서식) 및 제출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
→ (07233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
- ▶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상, **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**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채용담당(02-6788-208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2020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(신청서 1부만 제출). 다만,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.

※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진단서 발급일이 2019. 6. 9. 이전 이라면,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신청 시 원서접수 마감일로 부터 2년 이내의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.

마. 실기·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항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실기·면접시험 공고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.

## 7 가산 특전

### 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| 구 분 |              |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  | 취업지원 대상자     |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<br>(선발예정인원의 30% 이내) | · ①, ②는 각각<br>중복 적용 가능 |
| ②   | 직렬별 적용 가산자격증 | 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<br>(1개의 자격증만 인정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
※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은 사서직(일반)·전산직(일반)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
### 나. 취업지원 대상자(사서직(일반)·전산직(일반)만 해당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10% / 5%)을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(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).
- 상기 법률의 제·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한 후,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
※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: 보훈상담센터 (☎1577-0606)

## 다. 자격증 소지자

### (1)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

- 경위직, 방호직, 기계직, 통신기술직, 전기직, 조경직 응시자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| 직렬<br>(직류)      | 구 분  | 가 산 자 격 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산<br>비율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경위직<br>(경위)     | -    | 무도 3단 이상(태권도, 유도, 검도, 합기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%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무도 2단(태권도, 유도, 검도, 합기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%       |
| 방호직<br>(방호)     | -    | 무도 3단 이상(태권도, 유도, 검도, 합기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%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무도 2단(태권도, 유도, 검도, 합기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%       |
| 기계직<br>(기계)     | 기술사  | 기계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차량, 건설기계, 용접, 금형, 산업기계설비, 기계안전, 공장관리, 품질관리, 소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%       |
|                 | 기능장  | 기계가공, 에너지관리, 철도차량정비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정비, 용접, 금형제작, 판금제관, 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기사   | 일반기계, 메카트로닉스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기계설계, 용접, 프레스금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 농업기계, 에너지관리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승강기, 소방설비(기계분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산업기사 | 컴퓨터응용가공, 기계가공조립, 생산자동화, 기계설계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철도운송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치공구설계, 정밀측정, 용접, 프레스금형, 사출금형, 기계정비, 판금제관, 농업기계, 배관, 에너지관리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영사, 승강기, 소방설비(기계분야)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기능사  | 컴퓨터응용선반, 연삭, 컴퓨터응용밀링, 기계가공조립, 생산자동화, 전산응용기계제도, 공유압, 공조냉동기계, 에너지관리, 철도차량정비, 자동차정비, 자동차차체수리, 건설기계정비, 양화장치운전, 궤도장비정비, 정밀측정, 용접, 특수용접, 금형, 기계정비, 판금·제관, 농기계정비, 농기계운전, 배관, 동력기계정비, 영사, 승강기 | 3%       |
| 통신기술직<br>(통신기술) | 기술사  | 전자응용, 정보통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%       |
|                 | 기능장  | 전자기기, 통신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기사   | 전자, 정보통신, 전파전자통신, 무선설비, 방송통신, 정보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산업기사 | 전자, 정보통신, 통신선로, 사무자동화, 전파전자통신, 무선설비, 방송통신, 정보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| 직렬<br>(직렬)  | 구 분  | 가 산 자 격 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산<br>비율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| 기능사  | 전자기기, 통신기기, 통신선로, 정보기기운용, 전파전자통신, 무선설비, 방송통신, 정보처리, 전화교환(1997. 6. 1. 이전 취득) | 3%       |
| 전기직<br>(전기) | 기술사  | 발송배전, 건축전기설비, 전기응용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전기안전, 품질관리, 소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%       |
|             | 기능장  |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기사   |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승강기, 소방설비(전기분야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산업기사 |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승강기, 소방설비(전기분야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기능사  | 전기, 철도전기신호, 승강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%       |
| 조경직<br>(조경) | 기술사  | 조경, 자연환경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%       |
|             | 기사   | 조경, 자연생태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산업기사 | 조경, 자연생태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기능사  | 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%       |

- 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.
- ※ 위 표에 표시된 직렬별 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(2021. 8. 13.)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작성 후 **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**하여야 합니다(취득예정자는 ‘원서접수 방법’ 참고).
- ※ 원서접수 시 등록내용과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기입내용이 다른 경우 OMR답안지 기입 내용에 따릅니다.
- ※ 무도분야 자격증은 아래의 단체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.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태권도 | 국기원, 대한태권도협회, 세계태권도무도연맹, ITF태권도협회,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도  | 대한유도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검도  | 대한검도회, 대한해동검도협회, 대한검도연합회, 한국해동검도연합회, 한국해동검도협회,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합기도 | 대한합기도총협회, 대한기도회, 재남무술원, 대한국술합기도협회, 대한합기도협회, 한국정통합기도협회,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, 세계합기도협회, 대한신무합기도협회,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, 대한합기도총연맹, KOREA합기도협회,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, 대한합기도연맹, 대한합기도연합회,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, 세계합기도연맹,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, 대한합기도유술협회, 세계합기도연맹, 대한민국합기도협회,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, 대한민국합기도회 |

#### 라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(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, 자격증 사본)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지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자격증 가산점은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.
- 취업지원 대상자 /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.
-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8 지방인재 채용목표제

#### 가. 지방인재 채용목표제(사서직(일반), 전산직(일반)만 해당)

-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(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,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)

#### 나. 시행기간 :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

#### 다. 지방인재의 범위

-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(예정)·종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자(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)
  - ※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의 “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”를 참고하거나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(02-6788-208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라.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(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)

-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%입니다.
-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% 이내로 제한됩니다.

#### 마. 실시방법

-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%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하되,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(10%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
## 바. 증빙서류 제출

-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(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9 기타사항

-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국회인사규칙」, 「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」, 「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 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.
  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  -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(제1·2·3·4·5과목)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,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(02-6788-2081)으로 문의하시거나,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 [시험안내] 및 [질의응답]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

- 장애유형
- 시각 장애 : ☐ 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  
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
☐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
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
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
☐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  
☐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 이하인 사람  
☐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
- 뇌병변 장애 : ☐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
☐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
☐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
- 지체 장애 : ☐ 상지지체(장애정도가 심한 사람)  
☐ 상지지체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)  
☐ 하지지체
- 청각 장애 : ☐ 청각 장애
- 기 타 : ☐ (사유를 자세히 기재 )

■ 신청사유 :

※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

- 신청항목 :
- ( 장애 유형 별  
편의지원 항목  
내에서 복수신청 가능)
- ☐ 확대문제지(118%, 14 point)  
☐ 확대답안지(B4규격 표기형)  
☐ 음성지원 컴퓨터(이어폰 등 수화기 지참자)  
☐ 축소문제지(82%, 10 point, 확대독서기 지참자)  
☐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 
☐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
☐ 점자문제지  
☐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)  
☐ 시험 중 화장실 사용(※임신부 등 편의지원 항목 해당자)

☐ 노트북 제공(논문형 시험)  
☐ 대필(선택형 시험)  
☐ 별도 시험실(좌석간격 조정)  
☐ 휠체어 전용책상(높은 책상)  
☐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 
☐ 확대문제지(150%, 18 point)  
☐ 확대답안지(A3규격 표기형)  
☐ 높낮이 조절 책상

■ 인적사항 :

|        |  |   |        |  |
|--------|--|---|--------|--|
| 성명     |  | 연 | 집      |  |
|        |  | 락 | 휴대폰    |  |
| 주민등록번호 |  | 처 | E-mail |  |

본인은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기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. 편의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회사무처가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(공유를 포함)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1. . . 신청자 : (인)

국회사무총장 귀하